



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

1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 전파감시 및 전파종합관제
- 방송통신설비 안전점검 및 기술기준 적합조사
- GPS 전파교란 대응 및 중요통신망 보호
- 국내 위성보호 및 국내외 위성감시
- 전파혼신 처리 및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단속
-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및 탐지업 등록
- 전파차단장치 제조·수입 등 인가 및 도입신고

2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제도 운영
- CISO 대상 정보보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지역별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

3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용 준수 관리·감독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 기준 준수 조사
- TV방송 수신장애 조사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실태검사

4 전파·방송통신 행정서비스 제공

- 전기통신사업자 등록·관리 및 통신설비 제공제도 활성화
- 무선국 허가·검사 및 방송국 검사
- 전파환경 측정 서비스
- 정보통신·방송 분야 비영리법인 허가·감독

5 국제교류 협력 및 기술지원

-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국제 표준화 활동
-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 어린이 전파교실

중앙전파관리소

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emsit.go.kr

민원상담 080-700-0074 / 02-3400-2000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02-3400-2000
위성전파감시센터	(1741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	031-644-5900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북부사무소	(08249)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1160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02-2680-1700 031-849-5800
부산전파관리소	(46703)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00
광주전파관리소	(58214)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00
강릉전파관리소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980
대전전파관리소 - 당진사무소	(35283)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31754)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042-520-4100 041-360-2800
대구전파관리소	(42043)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00
전주전파관리소	(5531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제주전파관리소	(63037)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00
청주전파관리소	(2856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	043-261-5811
울산전파관리소	(45013)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0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

선박국 허가·신고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선박국에 대해 알아보까요?

선박국이란?

선박에 설치하여 해안국 또는 선박 상호 간 통신을 하는 무선설비를 선박국이라 합니다.

선박국 무선설비 종류

선박국에는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중단파대 무선전화(MF/HF), 자동식별장치(AIS), 비상위치지시용 위성무선표지설비(EPIRB) 등이 있습니다.

선박 종류별 무선설비

선박 종류	무선설비
2톤 이상 5톤 미만	VHF-DSC
5톤 이상	VHF-DSC, MF/HF
10톤 이상	VHF-DSC, MF/HF, AIS
24m 이상	VHF-DSC, MF/HF, EPIRB

※ '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된 3톤 이상 선박은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단말기(L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선박국 허가·신고 상담 및 신청

☎ 080-700-0074(무료)

선박국 허가·신고 안내

선박국 허가

선박국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선적항을 기준으로 관할 전파관리소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선박국을 운용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박국 재허가

허가받은 무선국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허가가 실효됩니다.

선박국 폐지신고·운용휴지

허가받은 선박국은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며, 선박 폐선 등으로 선박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폐지 또는 운용 휴지 신고를 해야 전파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용휴지 기간

1개월 이상 1년 이내이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운용 상태로 전환됩니다.

시설자 변경신고

선박 매매, 상속 등으로 선박 양도 시 관할 지자체에 선박 양도 신고하고, 양수자는 전파관리소에 선박국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선박국뿐만 아니라 V-PASS 및 LTE-M도 함께 시설자 지위 승계를 해야합니다. 함께 지위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파사용료는 어디에 쓰이나요?

전파사용료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전파진흥을 위해 사용됩니다.



사용기간 및 납부기간

사용기간	납부기간
1.1.~3.31.	5.18.~5.31.
4.1.~6.30.	8.18.~8.31.
7.1.~9.30.	11.18.~11.30.
10.1.~12.31.	다음 연도 2.18.~2월 말일까지

※ 선박국 전파사용료: 분기별 3천원
※ 1년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10% 감액
※ 자동이체로 정해진 출금일에 자동 납부 가능

